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Aphanizomenon flos-aquae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# 식품원료 Aphanizomenon flos-aquae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Aphanizomenon flos-aquae 원료는 성인에게 제공하는 식품에만 사용하며, 일일 섭취제한량은 건조중량으로 계산하여 3g이다.